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00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김용태 · 임종득 · 김성원
윤상현 · 김선교 · 이종배
김승수 · 조은희 · 고동진
박충권 · 김재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자금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수행 단계 또는 사후 법령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2025년 기준 녹색자금 사업비 지원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반납액은 17억 9,900만 원이며, 주요 미반납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 사업 후 발생한 자금 잔액을 2년 뒤 결산 시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에 발생한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수납 지방자치단체가 3곳(강원·경북·전남광주)에 달하며, 총 미수납액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녹색자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며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녹색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58조 및 제6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녹색자금의”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자금의”로, “그 밖의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녹색자금의 설치·운용목적을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자금을 환수하는 경우 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녹색자금)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58조(녹색자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산림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u> <u>2.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u> <u>3. 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u> <u>4. 그 밖에 녹색자금의 설치·운용목적에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⑦ 제6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u>
<u><신 설></u>	

<u><신 설></u> ⑥ <u>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u><신 설></u>	<u>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u> ⑧ <u>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자금을 환수하는 경우 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⑨ <u>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자금의-----사항은-----.</u> 제68조(청문)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58조제6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u>
--	---